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881
----------	-------

발의연월일 : 2026. 8. 28.

발 의 자 : 윤건영 · 허성무 · 김남희
문진석 · 윤종균 · 김성희
정태호 · 이주희 · 김우영
이용우 · 남인순 · 백승아
한준호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 송부 · 보관에 관한 기본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투표용지의 작성 기준, 투표시간 연장 및 개표개시 기준, 투표용지 부족 시의 대응체계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여 선거의 신뢰성이 저해되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투표용지의 수량을 선거구별로 선거인수 이상이 되도록 하고, 투표용지가 부족하거나 부족할 우려가 있는 경우의 보고 및 조치 의무 등을 신설하며, 상당수의 선거인이 선거일의 투표시간 내에 투표하지 못할 우려가 있을 경우 투표시간 연장의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선

거구의 모든 투표소에서 투표가 종료된 후 개표를 개시하도록 함으로써 선거관리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선거인의 참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51조제1항, 제151조의2, 제155조제2항 등).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1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투표용지는 투표구별 선거인수에 해당하는 수량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1조의2(투표용지 부족 시 보고 및 조치) ① 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가 부족하거나 부족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사실을 관할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및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해당 사실을 관할시·도선거관리위원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투표용지 부족의 규모 및 해당 투표구의 투표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 투표용지의 부족 또는 부족 우려가 확인될 경우 지체 없이 투표용지의 공급, 투표시

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표용지 부족의 발생 경위, 조치 현황 및 향후 대응계획을 지체 없이 공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투표용지의 부족 또는 부족 우려 시 보고 및 조치에 관한 세부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55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본문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6항 본문에”를 “제7항 본문에”로,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부족, 전기통신장애,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당수의 선거인이 선거일의 투표시간 내에 투표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투표구의 투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시간 연장 사실과 그 사유, 연장시간을 지체 없이 공표하여야 한다.

제17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개표는 해당 선거구의 모든 투표소에서 투표가 종료된 후에 개시하여야 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① 투표용지와 투표함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하여 선거일 전일까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며, 이를 송부받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투표용지를 봉합하여 보관하였다가 투표함과 함께 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① ----- ----- ----- ----- ----- ----- ----- ----- ----- ----- ----- . 이 경우 투표용지는 투표구별 선거인수에 해당하는 수량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 ⑨ (생략) <u><신설></u>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151조의2(투표용지 부족 시 보고 및 조치) ① 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가 부족하거나 부족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사실을 관할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및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해당 사실을 관할시·도선거관리위원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투표용지 부족의 규모 및 해당 투표구의 투표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 투표용지의 부족 또는 부족 우려가 확인될 경우 지체 없이 투표용지의 공급, 투표시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표용지 부족의 발생 경위, 조치 현황 및 향후 대응계획을 지체 없이 공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투표용지의 부족 또는 부족 우려 시 보고 및 조치에 관한 세부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第155條(投票時間) ① (생략)

第155條(投票時間) ① (현행과 같

<신 설>

② ~ ⑤ (생 략)

⑥ 제1항 본문 및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격리자등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격리자등에 한정하여서는 투표소를 오후 6시 30분(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 30분)에 열고 오후 7시 30분(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오후 9시 30분)에 닫으며, 사전투표소(제148조제1

음)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부족, 전기통신장애,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당수의 선거인이 선거일의 투표시간 내에 투표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투표구의 투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시간 연장 사실과 그 사유, 연장시간을 지체 없이 공표하여야 한다.

③ ~ ⑥ (현행 제2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⑦ -----제3항-----

[illegible]

⑧ 제7항-----

-----.

⑨ 제7항 본문에

제6항

투표 마감시각”으로 본다. 第175條(開票開始) ① ・ ② (생략) <u><신 설></u>	-----. 第175條(開票開始) ① ・ ② (현행과 같음) <u>③ 개표는 해당 선거구의 모든 투표소에서 투표가 종료된 후에 개시하여야 한다.</u>
---	---